

# “정부는 교회에 대한 감시, 무시, 탄압 멈춰야”

언론협회 ‘제18회 기독언론포럼’, 정부의 예배제재 비판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예배제재가 매우 불합리하다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사)한국기독언론협회(회장 분명원 국장)는 지난 11월 30일(월)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18회 기독언론포럼을 열고 코로나 시대 이후 정부의 부분별한 대응이 종교자유를 명백히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시대와 한국교회의 대응·예배회복의 긴급성’ 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김남식 박사(한국장로교신학회 회장), 임성택 박사(KC대학교 전 총장), 이일호 박사(설립나비 사무총장), 강준오 목사(교회연합신문 발행인) 등이 발제자로 나서, 예배와 관련한 사건과 전망에 대해 전문가적 견해를 펼쳤다.

이날 예배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원봉 장로의 사회, 윤광식 장로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사)한국기독언론협회 문명원 회장의 인사말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먼저 인사를 전한 회장 분명원 국장은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다. 이는 초대교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독교인들의 특권으로 어떤 법률이나 권리가 기독교인들로부터 이 특권을 빼앗을 수 없다”며 “정부는 방역을 빙자해 교회 예배를 일방적으로 금지시켰다. 한국교회의 예배가 심각한 위기에서 처했다”고 진단했다.

김남식 박사 “교회 첨체 극복 위해 예배 회복해야”

한국교회 예배회복의 긴급성’ 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친 김남식 박사는 먼저 예배의 근본적 이해를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게 놓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계시에 근거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로 보는 것이다”며 “기독교 예배는 계시 의존적 관계에 있으며, 그 중심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의 선취 행위에 대한 응답과 감사로써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적인 행위가 수반된다”며 “예배는 인간의 참여와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섬기의 열정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런 전제에서 한국교회의 첨체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예배부터 회복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한국교회는 최근 통계에서 꾸준히 성도 수가 감소하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로 감소세가 더 커질 것 이 확실해 보인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른 예배의 회복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괴롭혔다.

임성택 박사 “온리인교회 고착화, 성경적 교회 불가”

임성택 박사는 코로나 시대 속 대세로 자리잡은



비데면 예배와 온라인교회 고착화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했다. 임 박사는 먼저 비데면 예배를 정당화하는 주장들에 대해 무지의 오류라며 “예배는 ‘공간’ 아닌 ‘도임’을 지칭하며,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 도임의 질성이 예전에 예배”라고 정의했다.

하나 성도들이 걱정을 염려하는 코로나 방역의 순수성을 결코 부정할 수는 없다는 객관적인 입장도 보였다. 임 박사는 “이는 교리적 논쟁이 아닌 매우 신식적이고 보편적 논쟁이며, 현실적으로 매우 정당한 방역전문가의 주장이다”며 “사회는 결사적으로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반면, 교회는 방역당국의 순수한 간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에 교회의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교회는 사회에 대면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신앙적 이유를 간절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 시기에 치중 비데면 예배가 정당화되어, 온라인교회가 고착화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강력한 우려도 제기했다. 먼저 임 박사는 “비데면 예배가 성경적, 신학적으로 정당하다는 주장이 확립되는 순간부터 대면예배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된다”며 “하나분명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 주장에 동조하는 교회와 신학자들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온라인에 기반한 초대형교회의 등장도 예고했다. 임 박사는 “기본시설이 미약한 힘은 작은 교회들이 불교로 흘러진, 그리고 스스로 비데면 예배를 백한 부적 교인들을 끌어 모은 초대형교회의 등장을 예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부적 교인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몇 안되는 대형교회들을 중심으로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초대형교회로 성장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신학적으로 정당화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회와 예배의 개념조차 간단히 바뀔 것이고, 교회는 미침내 붕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일호 박사 “종교 전체에 대한 행정명령, 미치조

선총독부의 포고령”

강준오 목사 “정부 유독 기독교에 대한 감시 강화, 종교 갈등 이기”

정부의 과도한 방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일호 박사와 강준오 목사가 연이어 발언을 진행했다. 특히 이 박사는 사랑제일교회 밤 대규모 확산 사태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1개체가 일으킨 물의를 개신교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했으며, 신천지 확산 사태 당시 종교전체로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을 두고도 “조선총독부 포고령 같은 협박의 부개를 더한다”며 비난했다.

같은 맥락에서 강준오 목사도 “정부는 유독 기독교에만 감시를 강화했다. 우리 사회는 디종교 사회로, 정부가 어느 한쪽을 두둔하거나 또는 차별화하는 모습이 드러나면 곧바로 종교 갈등이 생겨난다”고 동의했다.

여기에 “한국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는 국제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기독교에 대한 탄압적 ‘방역정책’”가 개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마치 교회를 코로나의 근원으로 몰아 일방적으로 ‘예배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 교회를 감시하는 행위는 교회를 무시하고 탄압하는 행위다”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 외에도 이일호 박사는 정부와 대회를 하는 일부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향해 “포퓰리즘적 접근을 하는 것은 역사적, 국가적 위기를 직면한 현 시점에 성경적 자세라 보기 어렵다”며 “방역정책으로 국민의 기본권, 신앙과 양심의 자유, 학령적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라는 주장은 학령으로 외치는 선지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사)한국기독언론협회 공동

부모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헤아려지는 특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를 생생하게 깨달을 특권, 그리고 내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과 믿음을 내 양어로 자녀에게 전할 특권이 있다. 코로나 시대, 교회의 대면 예배도 멈춰 서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이파이발로 전정한 가정 교육과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질로의 기회다. 자녀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어차피 교회학교 1시간으로는 부족하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가 훌륭하지 않고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줄 것’을 준비해야 한다. 부모가 경간하고 신실하게 준비해야 자녀에게 건강한 영적 양식을 먹여 키우며 든든한 믿음의 유산을 전해줄 수 있다.

자자 : 이무현, 캠리 놀샘 권리인 | 출판사 : 흥성사

발행일 : 2020-11-13 | (145\*210)mm 240p | 판매가 : 14,000원

애들아, 아빠가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부모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헤아려지는 특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를 생생하게 깨달을 특권, 그리고 내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과 믿음을 내 양어로 자녀에게 전할 특권이 있다. 코로나 시대, 교회의 대면 예배도 멈춰 서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이파이발로 전정한 가정 교육과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질로의 기회다. 자녀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어차피 교회학교 1시간으로는 부족하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가 훌륭하지 않고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줄 것’을 준비해야 한다. 부모가 경간하고 신실하게 준비해야 자녀에게 건강한 영적 양식을 먹여 키우며 든든한 믿음의 유산을 전해줄 수 있다.

자자 : 이무현, 캠리 놀샘 권리인 | 출판사 : 흥성사

발행일 : 2020-11-30 | (132\*210)mm 256p | 판매가 : 14,000원



## 2021 예배와 설교 핸드북

1. 목회자가 알아야 할 2020년의 회고와 2021년의 전망 2. 본서의 저작자인 2021년도 예배 자료 - 예배로 블름, 예배 기원, 이 주일의 찬송, 성시 교육, 고백의 기도, 사합의 확산 수록 3. 예배를 위한 지침 - 예배 우등생이 되고 싶다 4. 바른 설교 시역을 위한 지침 - 설교자에게 드리고 싶은 간원(懇願)의 항목들 5. 주낮 예배 설교 지침 - 성서전집에 따른 설교의 핵심에 대한 형태 제시 - 본문 접근(본문의 재경험, 본문 개관, 본문 - 분석, 본문의 신학) 5. 행정 본문 설교를 위한 적용(오늘에 적용, 설교 개요 설교를 위한 예회) - 다양한 설교 형태 제시 - 대자, 이야기, 전개식, 이야기식, 네트워크, 분석, 귀납적, 강해 설교 .... 8. 매주일 영상 예배 자료 제공 - 피워포인트로 작업된 영상 예배 자료를 “예배와 설교 이카데미 홈페이지(www.wpa.or.kr)”를 통해 제공

자자 : 정장복 외 2인 | 출판사 : 예배와설교이카데미

발행일 : 2020-11-10 | (152\*225)mm 836p | 판매가 : 39,800원

정규직 차별이 만연한 사회 현실을 고려할 때 별도의 사유로 평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추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조약과 함께 입법에 그 어느 곳에서도 “고용형태”란 차별항목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의당”은 “고용형태”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근로와 단시간 근로, 기간근로, 피건근로, 그 밖에 통상근로로 이외의 근로형태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모집·채용, 임금, 고용·훈련, 배치, 승진, 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고용형태”를 차별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적 평정이 양립될 것이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시정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의 시정·법령 및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차별시정’ 등 차별시정 의무가 있고(‘인권위’는 재난 상황에서의 사회적 소수자 보호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다), 정부의 5년 단위 차별시정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나 광역 지자체장, 시·도교육감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체 단체 등에게 차별의 여지가 없는 ‘하여야 한다’로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인권위’의 개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은 인권위의 권고안을 존중하여 수립하고 차별금지법에 반하는 법령·조례와 규칙 각 종제도 및 정책 시정도 인권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인권위’는 시행계획의 이행결과 제출·구제권도 있다. 법률기관에 불과한 ‘인권위’를 한법기관인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 등을 자신의 의도대로 끌고나갈 수 있는 최상위 국가기구로 격상해 준 것이다. 그런데, ‘인권위’의 권한을 견제하는 장치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3)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고용·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 등 차별금지법에는 “불교·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인이나 방송사들이 이단종파, 타 종교 등을 응호하는 교육기관이나 성소수자 등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다. 모집·채용 임금·급품·지급, 고용·훈련 베치, 승진, 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대표적인 행위를 규정하고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이용, 교통수단 및 서비스 공급·이용, 상업·공공시설·토지·주거시설,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용 등 차·용역의 공급이나 이용’에서 발생 가능한 행위를 명시했다고 한다. 한편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에서 교육기회 및 교육내용 등 차별행위를,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에서 침해권 행사 및 행정절차·서비스 이용, 수사·재판 절차·서비스에서의 동등대우를 각각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이 또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차별금지 행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야말로 국민의 생활영역 거의 전부를 차별영역”으로 규율하려는 것이다. 금지로 못 봐는 차별행위들이 대부분 사인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다. 계약의 자유를 비롯한 사적자치의 원칙이 대폭 후퇴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론화’를 심층적으로 해야 한다. ‘고용’ 영역은 근로기준법이 상시 5인 미만이 근무하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해고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업장의 해고를 제한한다. 정당이나 종교단체 같이 특정의 사업·이념이나 신앙을 공유·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사업’의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 ‘정의당’은 차기부금기부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물론, 심지어 사업 또는 정치적 의견이 디스 수밖에 없는 ‘정당’의 운영까지 차별영역으로 본다. 시설물의 접근·이용을 대상으로 한 것은 “종교시설의 신천지 등 이단종파 출입허용 여부”, “생물학적 남성의 여성전용시설(의장실 포함) 사용여부” 등 현실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낳고, 방송 등 서비스 제공·이용의 차별금지는 “불교·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인이나 방송사들이 이단종파, 타 종교 등을 응호하는

‘고용·재화·용역’을 규율하고는 광고계체 등을 거절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고용형태”는 “정의당”과 ‘인권위’ 모두 비

용된다. 예상치 않게 차별금지법은 예상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성소수자 등이라고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는 시례로 열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 등에 대한 비난이 임암리에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숨은 차별이 생기는 것이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성소수자 등이라고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는 시례로 열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 등에 대한 비난이 임암리에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숨은 차별이 생기는 것이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성소수자 등이라고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는 시례로 열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 등에 대한 비난이 임암리에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숨은 차별이 생기는 것이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성소수자 등이라고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는 시례로 열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 등에 대한 비난이 임암리에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숨은 차별이 생기는 것이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성소수자 등이라고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는 시례로 열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 등에 대한 비난이 임암리에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숨은 차별이 생기는 것이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성소수자 등이라고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는 시례로 열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 등에 대한 비난이 임암리에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숨은 차별이 생기는 것이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성소수자 등이라고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는 시례로 열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 등에 대한 비난이 임암리에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숨은 차별이 생기는 것이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성소수자 등이라고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는 시례로 열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 등에 대한 비난이 임암리에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숨은 차별이 생기는 것이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성소수자 등이라고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는 시례로 열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 등에 대한 비난이 임암리에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숨은 차별이 생기는 것이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성소수자 등이라고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는 시례로 열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 등에 대한 비난이 임암리에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숨은 차별이 생기는 것이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성소수자 등이라고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는 시례로 열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 등에 대한 비난이 임